

##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지침(II)

자료원 : 식품의약품안전청

### 기타 특별법 추진업무

#### □ 고열량 · 저영양 식품 관리

##### 1. 고열량 · 저영양 식품에 대한 개념 및 제도도입 배경

###### <고열량 · 저영양 식품이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한 기준보다 열량이 높고 영양가(營養價)가 낮은 식품으로서 비만이나 영양불균형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어린이 기호식품(법 제2조제5호)

○ 관련 법령 : 법 제8조

###### 제8조(고열량 · 저영양 식품의 판매 금지 등)

- ①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고열량 · 저영양 식품의 영양성분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 ②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서는 고열량 · 저 영양 식품의 판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1. 학교
  2. 우수판매업소

\* 식품공업 제209호(2009.5)에 게재하지 못한 어린이식생활 안전관리지침 내용을 정리하여 실었음.

### □ 고열량 · 저영양 식품 관리에 대한 배경

- 어린이들이 영양을 골고루 갖춘 음식보다는 편리성 · 기능성을 중시하는 패스트푸드, 간편식을 선호하여, 당 · 지방 등의 섭취량이 많아진 반면 칼슘 · 철분 등을 평균 필요량보다 적게 섭취하는 등 영양 불균형 심화
  - 어린이 기호식품 중 일정 기준보다 열량이 높고 영양가가 낮아, 과다 섭취시 어린이의 비만이나 영양 불균형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식품에 대한 관리 필요

### □ 고열량 · 저영양 식품 관리를 위한 기준 설정(식약청 고시)

- 고열량 · 저영양식품의 영양성분 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의 비만예방 및 올바른 식생활 관리의 합리적 수행 필요
  - 고열량 · 저영양 식품 영양성분 기준을 적용할 대상식품 선정
  - 어린이의 식생활 패턴을 고려, 구분하여 기준 설정
  - 비만 등과의 연관성이 높아 어린이 건강저해가 “우려되는 성분”을 선정
  - 대상성분별 섭취 기여도 및 어린이의 기호식품 섭취횟수를 고려하여 기준치 설정
    - ☞ 다양한 요인을 검토하여 과학적 · 합리적 기준 고시('09. 4월 예정)

## 2. 고열량 · 저영양 식품에 대한 판정 및 관리

### □ 고열량 · 저영양 식품 판정

- 식품표시 정보를 활용하여 고열량 · 저영양 기준을 적용하여 판정
  - 1회 제공량 당 영양성분표시, 식품유형 등 정보 활용(식품등의 표시기준 및 축산물의 표시기준 참조)

### □ 고열량 · 저영양 식품의 판매금지 등 관리방법

#### 고열량 · 저영양 식품에 대한 판매 제한(법 제8조, 시행령 제7조)

- ☞ 학교 및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내 우수판매업소에서는 고열량 · 저영양 식품 판매 및 진열 금지
- ☞ 고열량 · 저영양 식품 영양성분 기준을 학교 및 우수판매업소에 통보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

- 식약청에서 고열량 · 저영양 식품 기준 마련 · 고시('09. 4월 예정)

- 어린이들이 쉽게 알 수 있는 판정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 · 홍보 실시
- 고열량 · 저영양 식품 기준과 해당 식품 목록을 배포(지자체, 지방식약청, 전담관리원, 식품공

업협회, 학교, 교육청, 우수판매업소 등)

※ 다만, '09년도는 계도기간으로 추진하고 '10년 1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단속할 예정

- 지자체는 기준, 해당 식품, 위반시 처분 등에 대하여 학교 매점 및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내 업소, 관할 구역 내 어린이 기호식품 제조가공업소 등에 홍보
  - 시·도에서 교육청 등과 협의하여 교육청 및 학교도 교내 매점 등에 고시 및 해당 식품에 대하여 교육할 수 있도록 협조
- 지방식약청은 수입신고된 어린이 기호식품의 표시사항을 미리 확인하여 고열량·저영양 식품 여부를 판별하고 이에 대해 사전 교육·홍보
- 각 지자체에서는 전담관리원 등을 활용하여 어린이 기호식품 중 해당 제품 확인 및 계도
  - 어린이 기호식품 생산자가 신규제품을 품목제조보고하는 경우, 고열량·저영양 식품은 학교와 우수판매업소에 판매할 수 없음을 사전 공지
  -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및 교내 매점 등 업소 지도·점검을 통하여 고열량·저영양 식품 판매여부를 확인하고 시정명령 등 조치
    -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및 전담관리원 교육시 고열량·저영양 기준 및 해당 식품에 대한 철저한 교육 실시
  - ☞ 교내 및 우수판매업소에서 고열량·저영양식품 판매 적발시 법령에 따른 조치 실시

## ② 미끼상품을 이용한 어린이 기호식품 광고 금지 등

### 1. 배경 및 방향

#### □ 추진 배경

- 어린이의 경우 미끼상품, 광고 등에 쉽게 현혹되므로 해당 식품의 안전성·품질 등에 관계없이 구매·섭취하므로 건강 저해 우려
- 어린이 기호식품의 광고를 관리함으로써 어린이가 건강한 식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환경 조성
  - ☞ 광고 제한을 위한 근거 마련(특별법 제10조)

### 제10조(광고의 제한 · 금지 등)

- ① 어린이 기호식품을 제조·가공·수입·유통·판매하는 자는 방송, 라디오 및 인터넷을 이용하여 식품이 아닌 장난감이나 그 밖에 어린이의 구매를 부추길 수 있는 물건을 무료로 제공한다는 내용이 담긴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어린이 기호식품을 제조·가공·수입·유통·판매하는자가 「방송법」 제2조제1호가목의 텔레비전방송을 이용하여 고열량·저영양 식품을 광고하는 경우 그 광고시간의 일부를 제한하거나 광고를 금지하게 할 수 있다.
- ③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제2항에 따라 광고시간의 일부를 제한하거나 광고를 금지하고자 하는 경우 그 대상이 되는 고열량·저영양 식품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 ④ 제2항에 따라 광고가 제한되는 시간, 그 밖에 제한 및 금지와 관련된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정책 추진 방향

- 관련 법령 : 법 제10~11조(제10조제2~4항, 제11조는 '10.1월부터 시행)
- 장난감 등의 물건을 미끼로 어린의 해당 식품 구매를 부추길 수 있는 방송, 라디오, 인터넷 등에서의 광고 금지
- 고열량·저영양 어린이 기호식품은 일정 시간대에 TV 광고 제한

## 2. 세부 관리 방안

#### □ 장난감 등 미끼상품을 이용한 광고 금지('09. 3. 22.부터)

- 어린이 기호식품을 제조·수입·판매하는 자는 방송, 라디오 및 인터넷을 이용하여 장난감이나 그 밖에 어린이의 구매를 부추길 수 있는 물건을 무료로 제공한다는 내용이 담긴 광고를 금지(법 제10조제1항)
  - ▣ 위반한 광고주에 대해서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식약청 본청에서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방송사, 대형 인터넷 포털업체 등에 관련 내용 통보 및 당부
  - 각 지방식약청 및 지자체에서는 해당 내용을 지역 방송사, 케이블 방송사, 지역 인터넷 포털업체 등에 공지하고 주기적으로 TV, 케이블, 라디오, 인터넷 등 모니터링

**□ 고열량·저영양 어린이 기호식품의 광고시간 제한('10. 1월부터)**

- 식품을 제조·수입·판매하는 자는 「방송법」 제2조제1호가목의 텔레비전방송을 이용하여 고열량·저영양 어린이 기호식품을 광고하는 경우 일정 시간대에 광고 제한
  - 식약청에서 제한대상이 되는 고열량·저영양 어린이 기호식품을 정하여 고시('09년말)
- 각 지방식약청 및 지자체에서는 식약청에서 고시하는 광고 제한 대상 고열량·저영양 어린이 기호식품에 대하여 숙지하고 주기적·지속적 모니터링 실시
  - 위반 확인시 과태료 등 처분 또는 관할관청으로 처분 요청

**③ 대규모 외식업소 영양성분 표시 및 우수식품 녹색표시제도**

**1. 배경 및 방향**

**□ 추진 배경**

- 외식문화의 확산으로 패스트푸드, 간편 식품 등의 소비는 증가하고 있으나, 영양 정보가 부족하여 올바른 메뉴선택이 어려움
- 현행 영양성분 표시제도는 어린이들이 알아보기 어려워 영양이 우수한 식품을 선택하기 어려움
- 관련 법령 : 제11조, 제12조

**제11조(영양성분 표시)**

- ① 「식품위생법」 제2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영업자 중 주로 어린이 기호식품을 조리·판매하는 업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자가 조리·판매하는 식품은 그 영양성분을 표시하여야 한다.
- ②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제1항에 따른 영양성분 표시를 위한 표시기준 및 방법 등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제12조(영양성분 색상 표시)**

- ①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어린이 기호식품에 들어 있는 지방(脂肪), 당(糖), 나트륨 등의 영양성분에 대하여 기준을 정하고 그 기준에 맞는 식품을 우수식품으로 하며, 그 우수식품에 대하여 녹색 등 색상으로 표시(이하 “색상 표시”라 한다)하게 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영양성분을 색상으로 표시하여야 하는 어린이 기호식품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색상표시를 위하여 표시방법 등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 □ 정책 추진 방향

- 2010년 1월 1일부터 어린이 기호식품을 조리·판매하는 대규모 가맹점을 가진 외식업소의 영양성분 표시 의무화
  - 100개 이상의 가맹점을 가진 외식업체에서 조리·판매되는 식품에 영양성분 표시 추진
- 2010년 1월 1일부터 어린이들이 영양이 우수한 어린이 기호식품을 쉽고 빠르게 알아볼 수 있도록 영양성분 기준에 적합한 우수 어린이 기호식품에 녹색 등 색상표시

## 2. 세부 관리 방안

### □ 대형 외식업소의 영양성분 표시 의무화(‘10. 1월부터)

- 대상 영업자 : 주로 어린이 기호식품을 조리·판매하는 업소로서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제과점 중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가맹사업에 의해 운영되는 외식업체의 점포수(직영점+가맹점)가 100개 이상인 업소의 영업자
- 음식점 영양표시 기준 및 방법은 식약청에서 고시(‘09년말)
  - 식약청은 음식업중앙회, 대형 프랜차이즈 업체 등에 해당 내용 통보
- 지자체에서는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등을 활용하여 영양성분 표시제 추진이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 확인

### □ 우수 어린이 기호식품 녹색표시(‘10. 1월부터)

- 식약청에서는 색상표시를 위한 영양성분 기준 및 방법을 마련하여 고시
  - 기준에 적합한 어린이 기호식품에는 녹색 표시 추진
- ※ 현재 동 조항에 대하여 신호등 표시제로 대체하자는 법률 개정안이 국회 계류중 ('08.8.19, 안홍준 의원 발의)

## ④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를 위한 교육·홍보

### 1. 배경 및 방향

#### □ 추진 배경

- 어린이 등이 어린이 식생활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받고 이에 따라 올바른 식습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식약청, 지자체, 교육청 등에서 어린이 식생활 안전·영양 관리에 대한 교육·홍보 실시
- 관련 법령 : 법 제13조

### 제13조(어린이 식품안전·영양교육 및 홍보 등)

- ① 식품의약품안전청장,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시·도 교육청장은 모든 어린이들이 건강하고 바른 식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개인 또는 집단의 특성, 건강상태 및 건강의식 수준에 따라 어린이 기호식품에 대한 안전과 영양공급 등에 대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 ② 학교 중 초등학교의 장은 어린이 식생활 관리에 필요한 안전 및 영양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 □ 정책 추진 방향

- 어린이들이 건강하고 바른 식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개인 또는 집단의 특성, 건강상태 등에 따라 어린이 기호식품에 대한 안전과 영양공급 등에 대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여야 함

## 2. 세부 관리 방안

#### □ 식약청, 지자체, 교육청 등 역할별로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교육·홍보 실시

- 시·군·구 담당 직원과 시·도 담당 직원은 상호 협조하여 지정 학교 학생, 교사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여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 관련 사항 등 식생활 안전·영양 교육·홍보 실시(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에 국한하지 않고 실시)
- 시·도 교육청은 지역교육청과 협의하여 어린이 기호식품에 대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되, 필요시 지자체·지방식약청 등과 협조
  - 또한, 초등학교에서는 학교장이 정하는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여 정기적으로 위생·영양 교육이 원활히 실시될 수 있도록 조치
  - ※ 교육청에서는 학교 내의 업소 등에 대하여도 고열량·저영양 식품, 어린이 정서저해식품, 건강저해식품, 부정·불량식품을 판매하지 않도록 홍보·계도
- 지방식약청은 관할 지역에서 교육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교육 인력 등 지원
  - 식약청 유관 부서에서 보유하고 있는 다양한 교육·홍보 아이템을 공유할 수 있도록 협조
  - 또한, 자체적으로 개발·제작한 교육·홍보자료도 다방면으로 활용
- 시·도 및 시·군·구 요청시 관련 교육·홍보 자료 협조 및 강사 등 인력 지원 적극 협조

## ⑤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 및 건강친화기업 지정

### 1. 배경 및 방향

#### □ 추진 배경

- 식품업체가 안전하고 영양을 고루 갖춘 어린이 기호식품을 생산·판매할 수 있도록 여건 조성 ⇒ 우수한 어린이 기호식품에 대한 소비자 선택권 보장
- 어린이 식생활 안전에 대한 기여도가 높거나 선도적인 활동을 하는 기업을 국가에서 지정하여 어린이 식생활 안전 분위기 확산 및 공감대 형성
- 관련 법령 : 법 제14~20조

#### 제14조(품질인증기준 및 표시)

- ①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안전하고 영양을 고루 갖춘 어린이 기호식품의 제조·가공·유통·판매를 권장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고시한 품질인증기준에 적합한 어린이 기호식품에 대하여 품질인증을 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품질인증을 받은 어린이 기호식품은 용기·포장 등에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형 또는 문자의 표시를 할 수 있다.
- ③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 업무를 식품 관련 정부출연기관 또는 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18조(품질인증 취소 및 표시변경 명령 등)

- ①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품질인증식품의 인증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하거나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표시사용을 하지 못하게 할 수 있다.
  1. 속임수 등 부정한 방법으로 품질인증을 받은 경우
  2. 품질인증식품이 품질인증식품 기준과 맞지 아니한 경우
  3. 부적합하게 제조·생산되어 인체의 건강에 대한 위해가 발생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에 따른 표시변경·사용정지 또는 판매금지 등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경우
  5. 품질인증식품이 「식품위생법」, 「학교급식법」 또는 「축산물가공처리법」을 위반하여 영업정지, 품목류제조정지, 품목제조정지의 행정처분을 받아 그 처분이 진행 중인 경우
- ②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품질인증식품 표시가 된 어린이 기호식품에 대하여 수거·검사 등을 실시한 결과 품질인증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 그 식품을 제조·

가공·수입한 자 또는 유통·판매업자에게 품질인증식품 표시의 변경·사용정지 또는 판매금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증취소 및 표시변경·사용정지 등의 세부적인 기준은 보건복지기족부령으로 정한다.

### 제19조(어린이 건강친화기업 지정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어린이 기호식품과 단체급식의 안전을 확보하고 영양수준을 향상하기 위하여 모범적인 활동을 하는 식품 영업자를 어린이 건강친화기업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건강친화기업으로 지정받은 영업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은 표시·광고를 할 수 있다.

1. 어린이 기호식품을 제조·가공·수입하는 자는 해당 식품의 용기·포장 등에 건강친화기업의 로고를 표시하거나 광고에 사용
2. 어린이 기호식품을 조리·판매하는 업소는 간판 등에 건강친화기업의 로고를 부착하거나 광고에 사용

### 제20조(어린이 건강친화기업 지정업무 위탁)

-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어린이 건강친화기업 지정 업무를 식품 관련 정부출연기관 또는 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업무에 사용되는 비용은 국가가 지원하여야 한다.

## □ 정책 추진 방향

- 식약청이 고시한 기준에 적합한 안전하고 영양을 고루 갖춘 어린이 기호식품에 대하여 품질을 인증하는 제도 도입(법 제14조)
  - 식약청 또는 위탁기관에서 신청을 받아 제품 및 업체를 심사하여 정해진 인증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결정
  - 인증받은 어린이 기호식품에는 용기·포장 등에 품질인증 마크를 표시할 수 있도록 허용
    - ☞ 국가에서 품질을 인증한 우수 어린이 기호식품에 대한 소비자 선택권을 보장하여 우수한 식품에 대한 소비자의 구매욕구를 충족하고 관련 산업의 육성을 도모
- 어린이 기호식품과 단체급식의 안전을 확보하고 영양수준을 향상시키는 등 식약청이 고시한 기준에 적합한 모범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 기업을 어린이 건강친화기업으로 지정하는 제도 도입(법 제19조)
  - 식약청 또는 위탁기관에서 신청을 받아 제품 및 기업을 심사하여 정해진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결정

- 건강친화기업으로 지정받은 영업자(제조·가공·수입업소)는 해당 식품의 표시·광고에 로고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조리·판매업소의 경우 간판 등에 로고를 부착하거나 광고에 사용 가능)
- ☞ 어린이 식생활 안전을 위해 타기업에 대한 수법이 될만한 활동을 한 기업에 국가에서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어린이 식생활 안전 개선 분위기를 확산시키고 업계 및 소비자의 공감대를 형성

## 2. 세부 관리 방안

### □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 및 관리

#### ○ 품질인증 대상식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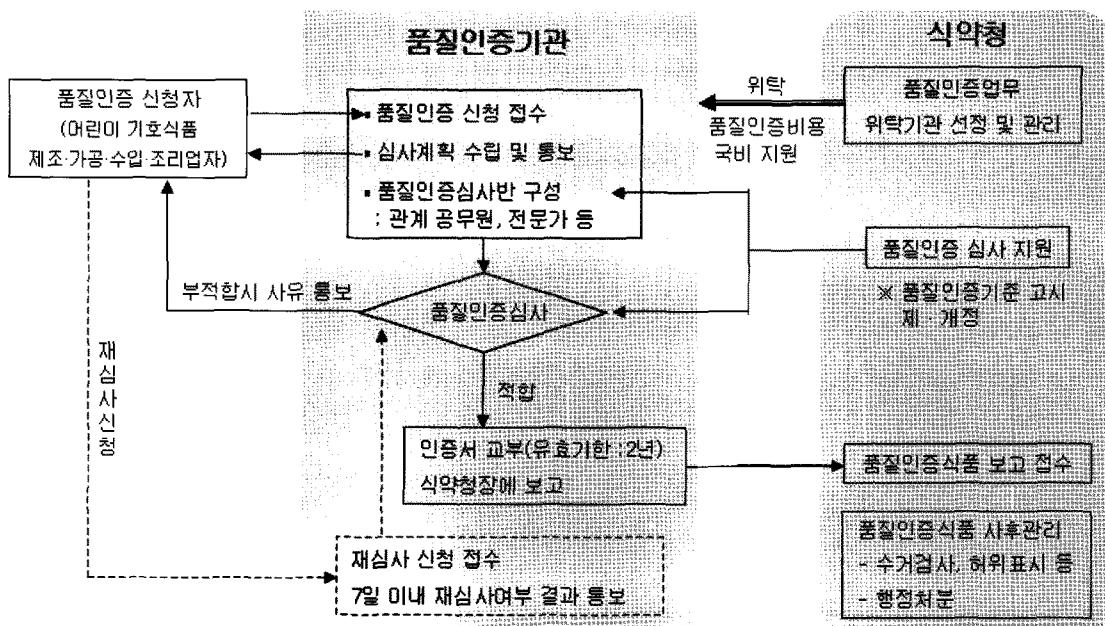
- 제조·가공·수입·조리·판매되는 어린이 기호식품

#### ○ 품질인증 기준(식약청에서 고시 예정, '09. 4월 예정)

- 식약청 또는 품질인증기관은 안전·품질·영양·식품첨가물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식품에 대하여 인증을 할 수 있음.

#### ○ 품질인증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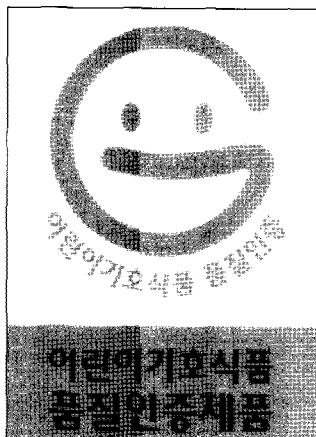
- 어린이 기호식품 제조·조리·수입업자가 신청 ⇒ 식약청(또는 위탁기관)에서 심사단 구성하여 영업장 심사 및 제품심사 ⇒ 판정 및 지정 ⇒ 사후관리



\* 품질인증기관이 없을 경우 식약청에서 위 그림의 품질인증기관의 업무까지 수행

○ 인증 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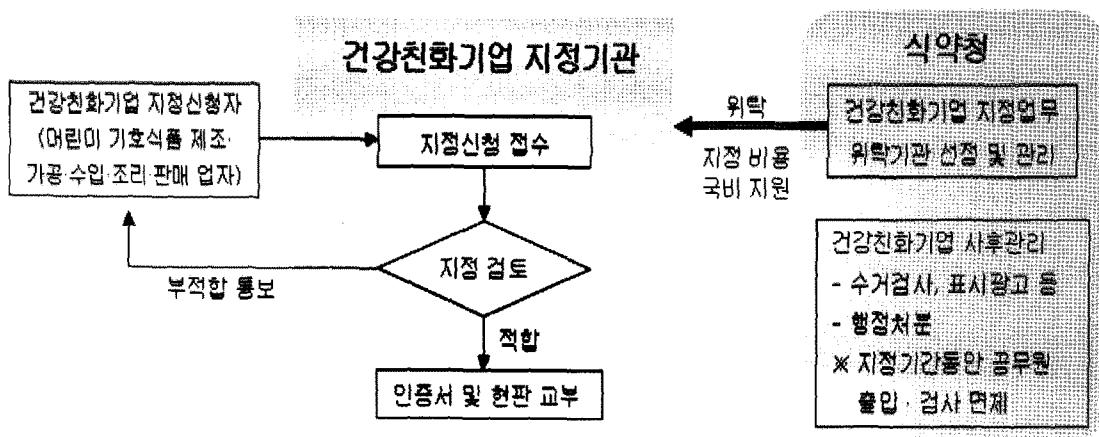
- 인증받은 제품에 품질인증 마크 표시(영업자가 제품 포장에 표시, 조리제품의 경우 메뉴판 등에 표시)



- 각 지자체·지방식약청에서는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에 대한 기준 및 체계를 이해하고, 사후관리가 가능하도록 품질인증 취소 기준(시행규칙 제14조 관련 별표 6) 등을 참고하여 해당 제품 모니터링 등 실시 ⇒ 위반 사항 확인시 식약청 통보

□ 어린이 건강친화기업 지정 및 관리

- 대상 영업자 : 어린이 기호식품 제조·수입·조리업자, 어린이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위탁급식영업자
- 건강친화기업 지정 기준(식약청에서 고시 예정, '09. 4월 예정)
  - 건강친화활동 계획 및 이에 따른 활동 실적을 평가하여 우수한 영업자를 건강친화기업으로 지정
    - 안전·품질관리 실적, 식품사고 예방시스템 구축 등을 포함한 활동내역 심사
    -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거나 식중독 사고가 발생한 경우 제외
- 건강친화기업 지정 절차
  - 어린이 기호식품 제조·조리·수입업자가 신청 ⇒ 식약청(또는 위탁기관)에서 건강친화활동 내역 등 심사 ⇒ 판정 및 지정 ⇒ 사후관리



\* 건강친화기업 지정기관이 없을 경우 식약청에서 위 그림의 지정기관의 업무까지 수행

#### ○ 건강친화기업 지정 표시

- 지정받은 업소는 정문 등에 현판 설치, 해당 업소에서 생산된 제품에 건강친화기업 지정 마크 표시 가능

<제품 표시>



## ⑥ 어린이 식생활 안전지수 산출 · 평가

### 1. 배경 및 방향

#### 〈어린이 식생활 안전지수란 · (법 제2조 제4항)〉

어린이를 위하여 식품안전 및 영양관리에 관한 정책을 수행하고 어린이 기호식품 및 단체급식 등을 제조 · 판매 또는 공급하는 환경을 개선하는 정도를 평가하여 도출한 수치

#### □ 추진 배경

- 어린이 식생활 안전과 영양수준이 미흡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으나 이를 객관적으로 확인 · 평가할 수 있는 지표나 시스템 부재
  - 어린이 식생활 환경개선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 확산 및 공감대 형성을 위한 평가 관리체계 구축 필요
- 관련 법령 : 법 23~24조

#### 제23조(식생활 안전지수 조사 등)

- ①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어린이 식생활의 안전과 영양수준을 객관적으로 확인 · 평가하기 위하여 식생활 안전지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조사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 ②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식생활 안전지수의 조사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사에 사용되는 비용은 국가가 지원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식생활 안전지수의 조사 항목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 □ 정책 추진 방향

- 식약청은 어린이 식생활의 안전 · 영양수준 확인 · 평가를 위하여 식생활 안전지수를 3년마다 조사 · 공표(법 제23조, 시행령 제15조)
  - 식약청은 정부출연연구기관, 보건산업진흥원 등에 어린이 식생활 안전지수 조사 · 산출 위탁 가능
  - 안전지수 조사 항목 및 방법 등은 식약청에서 고시('09. 4월 예정)
- 각 지자체의 어린이 식생활 환경개선 노력과 실적을 평가하여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정책의 실효성 확보

## 2. 어린이 식생활 안전지수의 산출 절차

- 식약청 또는 조사기관은 항목별 조사 대상, 조사 일정, 조사 내용 및 범위 등을 포함한 조사 계획을 수립하여 조사 실시 3개월 전에 공표
- 식약청 또는 조사기관은 조사 계획에 따라 관련 기관의 자료 검토 및 설문 조사의 방법을 활용하여 지수항목을 조사
- 식약청은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일반일간신문 등에 어린이 식생활 안전지수 공표
  - 식약청장은 안전지수를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종합계획 수립 등 어린이 식생활 안전·영양 개선을 위한 정책에 활용

## 3. 지자체의 어린이 식생활 안전·영양 수준 평가

### 제24조(시·군·구의 식생활 안전·영양수준 평가 등)

- ①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제23조제1항에 따른 식생활 안전지수를 이용하여 시·군·구별로 식생활 안전·영양수준을 조사·평가하여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식생활 안전·평가수준의 조사절차, 평가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기족부령으로 정한다.

- 식약청은 어린이 식생활 안전지수를 활용하여 시·군·구별로 식생활 안전·영양 수준을 평가하여 공표
  - 식약청에서 조사·평가 대상 시·군·구 선정 후 조사·평가 3개월 전에 대상 시·군·구에 평가 계획 등에 대하여 통보
    - ※ 인구규모 및 생활여건 등에 따라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등으로 구분하여 3년마다 조사·평가 실시
  - 객관적인 자료 분석 및 조사·평가를 위하여 식약청은 학계 및 관련 공무원 등 전문가로 구성된 조사·평가반 운영
    - 각 지자체, 관계 기관 등은 조사·평가를 위한 통계자료 등 요청받을 경우 해당 자료 제출
    - 조사·평가 대상 시·군·구의 제출자료에 대한 서면 평가 및 현지 확인 평가 실시
    - 조사·평가 결과 분석, 평가 완료후 1개월 이내에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식약청장에게 보고하고 해당 지자체에 통보 및 공표(조사·평가를 실시한 후 다음 해 3월에 공표하여야 함. 인터넷, 일간신문 등)
    - ☞ 우수평가를 받은 시·군·구에 대하여 포상 검토

## ⑦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종합계획

### 1. 배경 및 방향

#### □ 추진 배경

- 어린이 식생활 안전·영양 관리의 올바른 방향 정립 및 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주기적으로 국가의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정책에 대한 평가·조율, 실효성 없는 제도의 폐지 및 신규정책 수립 등 정책관리 필요
  - 식약청에서 '07년도 어린이 먹을거리 안전 종합대책 수립·추진 중이나 시대적·정책적 환경변화 등 다양한 변화요인에 따른 신규 종합계획 수립 필요
- 관련 법령 : 제26조

#### 제26조(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종합계획 수립)

- ①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3년마다 어린이 기호식품과 단체급식 등의 안전 및 영양 관리 등에 관한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종합계획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종합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어린이 기호식품 등의 안전정책의 목표 및 기본방향
  2. 어린이 기호식품 등의 변화와 전망
  3. 어린이 기호식품 등의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4. 어린이 기호식품 등에 관련한 연구 및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5. 어린이 기호식품 등의 안전을 위한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6. 어린이 기호식품 등을 제조·가공·수입·조리하여 판매하는 자에 대한 지원과 안전성 확보를 위한 지원방법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어린이 기호식품 등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종합계획을 기초로 하여 매년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시행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④ 그 밖에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정책 추진 방향

- 식약청은 3년마다 효과적인 어린이 식생활 안전·영양 관리를 위하여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 각 지자체에서도 식약청의 종합계획을 토대로 매년 자체 시행계획을 수립·추진

## 2. 세부 추진 방안

### □ 식약청의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종합계획 수립

- 식약청에서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는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종합계획 작성
  - 어린이 기호식품 등 안전정책의 목표 및 기본방향
  - 어린이 기호식품 등의 변화와 전망
  - 어린이 기호식품 등의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 어린이 기호식품 등에 관련된 연구 및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 어린이 기호식품 등의 안전을 위한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 어린이 기호식품 등을 제조·가공·수입·조리하여 판매하는 자에 대한 지원과 안전성 확보를 위한 지원방법에 관한 사항
- 작성된 종합계획안은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위원회를 통하여 학계 등 전문가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
- 종합계획이 확정되면 식약청은 종합계획이 시행되는 해의 전년도 9월 30일까지 시·도로 통보('09. 9월 30일까지 통보 예정)

### □ 시·도의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시행계획 수립

- 식약청의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종합계획을 토대로 각 시·도는 시·도 교육청 등과 협의하여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시행계획을 수립(매년)
  -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정책 추진함에 따라 발생되는 문제점 및 필요한 개선책 등을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시행계획에 반영
  - 제외국의 관련 자료를 참고하여 지역적 특성에 맞게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시행방안 검토
  - 학교 관계자 및 시·도 교육청 등과 협의하여 타부처의 기존 정책과 상충되지 않도록 계획 수립
  - 각 시·도는 수립된 시행계획을 매년 1월 31일까지 전년도 추진실적과 함께 식약청으로 제출('10년도의 경우 '10년 시행계획을 '10.1.31일까지 제출)